

교 육 규 정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illegible]

유효페이지 목록 (List of Effective Page)

Page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Page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Approved by 				8	2020.08.25	2025.03.10	25-1
				9	2020.08.25	2025.03.10	25-1
				10	2020.08.25	2025.03.10	25-1
				11	2020.08.25	2025.03.10	25-1
				12	2020.08.25	2025.03.10	25-1
				13	2020.08.25	2025.03.10	25-1
				14	2020.08.25	2025.03.10	25-1
				15	2020.08.25	2025.03.10	25-1
				16	2020.08.25	2025.03.10	25-1
유효페이지 목록				제5장 시설장비 및 비품, 교재			
i	2020.08.25	2022.07.15	-	17	2020.08.25	-	NEW
목 차				제6장 평가			
ii	2020.08.25	-	NEW	18	2020.08.25	2023.04.10	23-1
iii	2020.08.25	-	NEW	19	2020.08.25	-	NEW
iv	2020.08.25	-	NEW	제7장 학사관리			
제1장 총칙				20	2020.08.25	-	NEW
1	2020.08.25	2022.07.15	22-1	21	2020.08.25	-	NEW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8장 교육품질 관리 보증 방안			
2	2020.08.25	2022.07.15	22-1	22	2020.08.25	2023.04.10	23-1
3	2020.08.25	2025.03.10	25-1	제9장 보증보험 가입 및 교육비 반환			
4	2020.08.25	-	NEW	23	2020.08.25	2022.07.15	22-1
제3장 자격요건				제10장 상벌			
5	2020.08.25	-	NEW	24	2020.08.25	-	NEW
6	2020.08.25	-	NEW				
제4장 학사운영							
7	2020.08.25	2025.03.10	25-1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육목표 및 목적.....	1
제2조	교육기관의 명칭.....	1
제3조	교육기관의 소재지.....	1
제4조	교육과정 명칭.....	1
제5조	교육대상.....	1
제6조	교육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제 2 장 조직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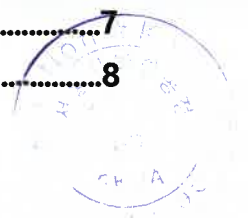
제7조	조직.....	2
제8조	교육원장의 책임.....	2
제9조	교육운영위원회.....	3
제10조	교육운영위원회의 임무.....	3
제11조	주임교관의 책임.....	3

제 3 장 자격요건

제12조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요건.....	5
제13조	기타.....	6

제 4 장 학사운영

제14조	교육계획.....	7
제15조	과정운영.....	7
제16조	교육정원.....	7
제17조	교육기간 및 편성.....	7
제18조	입과.....	8



제19조	선발.....	9
제20조	학점인정.....	9
제21조	편입.....	9
제22조	휴학.....	9
제23조	유급.....	9
제24조	복학.....	10
제25조	제적.....	10
제26조	결석자 처리 기준.....	10
제27조	교과편성.....	10
제28조	학생의무.....	16
제29조	재정.....	16
제30조	회계.....	16

제 5 장 시설 장비 및 비품,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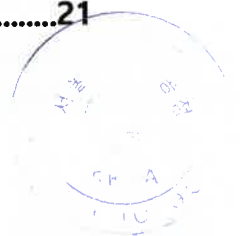
제31조	시설장비.....	17
제32조	교육교재.....	17
제33조	교육비품.....	17
제34조	안전보호장구.....	17

제 6 장 평 가

제35조	평가방법.....	18
------	-----------	----

제 7 장 학사관리

제36조	학사보고.....	20
제37조	증명서 발급.....	20
제38조	기록 및 보관.....	21



제 8 장 교육품질 관리 보증 방안

제39조	교육훈련 품질보증.....	22
제40조	과정평가 설문.....	22
제41조	교관평가.....	22
제42조	시험문제의 품질관리.....	22

제 9 장 보증보험 가입 및 교육비 반환

제43조	보증보험 가입.....	23
제44조	교육비 반환.....	23

제 10 장 상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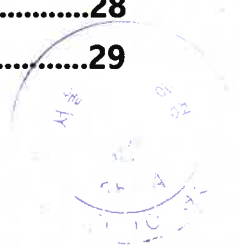
제45조	포상.....	24
제46조	징계.....	24

부 칙

제47조	준용.....	25
------	---------	----

별 표

별지 1	이수증명서.....	26
별지 2	교육품질을 위한 설문지.....	28
별표 3	현장실습 일지.....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육목표 및 목적)

본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및 목적은 학교법인 함주학원 정관 제78조 제1항과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항공안전과 항공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 (교육기관의 명칭)

본 교육기관의 명칭은 한서대학교 부설 항공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 (교육기관의 소재지)

본 교육기관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곰섬로 236-49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내에 위치한다.

1. 학과교육은 충청남도 태안군 곰섬로 236-49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내에 둔다.
2. 실기교육(기초실기, 전공실기)은 충청남도 태안군 곰섬로 236-49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내에 위치한 항공기술교육센터에 항공정비실습장을 둔다.

제4조 (교육과정 명칭)

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명칭은 "항공정비사 양성전문교육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육과정운영 기준 및 한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부합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의 항공정비사 훈련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 방법을 준용하면서 학사학위가 병행되도록 하는 항공정비사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제5조 (교육대상) 본 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선발 방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별도의 모집요강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 (교육규정의 제정 및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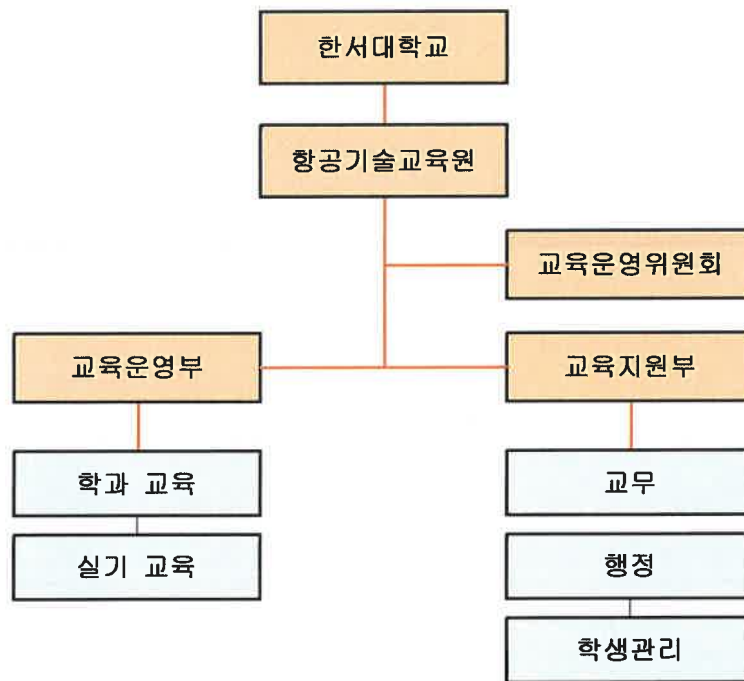
본 규정은 교육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교육의 기본방침, 교과 과정의 전면적 개편, 학과 교수의 자격기준 등 교육원 교수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책임

제7조 (조직)

본 교육원은 한서대학교 부설로 두며 한서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 교육기관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며,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교육원 교원인 항공기술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항공기술교육원의 지휘 관리 권한을 갖는다.

1. 교육원장은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2. 항공정비사과정 행정업무는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추어서 한다.
3. 항공기술교육원에서는 주임교관, 학과주임교관, 실기주임교관, 학과교관, 실기교관 및 실기시험관을 둔다.
4. 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사를 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한서대학교 조직도

제8조 (교육원장의 책임)

교육원장은 본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유능한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전문교육기관의 훈련목적과 교육지침 수립 및 적용
- 나. 전문교육기관 소속의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

- 다.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의 업무 감독 및 교관회의 진행
- 라. 과정 입과자원의 충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
- 마. 과정 수료자원에 대한 취업 촉진계획 수립
- 바.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사.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관리
- 아. 실기시험관의 발굴 및 인력 관리
- 자. 외부 산학연계 협력활동

제9조 (교육운영위원회)

- 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나. 위원장은 교육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운영부장, 교육지원부장, **항공정비학과장, 항공기계공학과장**, 항공전자공학과장 및 필요시 기타 입과 학생소속의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운영부장이 겸임한다.
- 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교육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주임교관의 책임)

주임교관은 교육원장이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학과, 실기)의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훈련

- 1) 훈련활동 관찰 및 필요시 참여, 교관회의 진행, 훈련 진행 확인
- 2) 교육장 등의 사유로 인한 주요 프로그램 변경 조정
- 3)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의 업무 감독 및 교관 선발

나. 훈련기준

- 1) 학과 및 실기교관의 기준 프로그램 조정(학과 및 실기주임교관의 특별 프로그램 확인. 인가 후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관찰 및 참여)
- 2) 교육 및 훈련항목 프로그램 검토 및 수정이 필요시 관리자에게 통보
- 3) 직원 배치 및 장비 관계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자문
- 4) 최신 훈련기법 유지를 위해 타 교육기관 방문, 연락, 협의 및 자료 조사

- 5) 필요시 신규 훈련기법 소개 및 도입(주요 수정내용을 국토교통부 및 관리자에게 자문)
- 6) 항공사에서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방문 및 연락 관계 유지
- 7) 신규 교관에게 교육기관의 훈련목적 설명(각 신규 교관에게 훈련항목 등의 사본 배부 및 이해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 8) 모든 교관이 표준용어를 사용토록 교육 및 준수 여부 감독

다. 기타 사항

- 1) 본 규정의 제10조 가목에서부터 나목까지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지휘 감독
- 2) 국토교통부의 관계 규정 및 지시 등이 준수되는지를 확인
- 3) 학과 및 실기교육 진행 및 학생복지 사항 등의 기록체제 확립
- 4) 학생 진도가 미진한 경우 보완조치 결정 및 시행(계속 미진 시 관리자에게 자문)
- 5) 최종실기테스트 전에 모든 절차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6)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
- 7) 본 교육원 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실기 수업의 이관 교육 담당

제 3 장 자격요건

제12조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

가. 학과교관

- 1) 학과교관 중 1명을 학과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관은 학과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학과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2) 학과교관은 학과의 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학과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3) 학과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4) 학과교관의 자격은 21세 이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경력과 해당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자격증명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항공법규, 기초전기, 인적성능 및 한계, 수학, 물리, 일반기계 과목은 제외한다)

단, 다음 교과목의 경우,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 목	자 격 증 명 등
1. 항공장비 (전기, 계기, 전자, 무선 통신, 레이더 및 항법장비 등)	항공정비사 또는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인적 성능 및 한계 중 항공생리·심리 및 구급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의학에 관 한 교육을 받은 의사

- 5)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의 제9호 나목 1) 나) (1)에 의하여, 학과 교관의 강의는 학기 중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야 한다. 단,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실기교관

- 1) 실기교관 중 1명을 실기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기주임교관은 실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2) 항공정비사과정의 경우 실기교육 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실기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3) 실기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학과교관을 겸임 할 수 있다.

- 4) 실기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을 그룹(Group)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룹별로 담당실기교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 5) 실기교관의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의 제9호 나목 2) 나) (1)에 의하여, 학과 교관의 강의는 학기 중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2명 이하로 한다.

다. 실기시험관

- 1) 실기시험관의 자격요건과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의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임명 후 항공안전법 제48조 제9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 2) 실기시험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실기심사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교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 다) 실기심사를 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 3) 운영기준
 - 가) 필요시 실기시험관은 학과교관 및 정비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 나)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할 수 없다.
 - 다)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정비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

제12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다음의 내용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교관은 그 교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은 피교육생들의 80% 이상이 해당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교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명 또는 총 교관수의 25% 미만의 보조 교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14조 (교육계획)

교육원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4조 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항공안전법 제48조 제9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제15조 (과정운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및 별표 12의 9호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에 의거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제16조 (교육정원)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입과정원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정원(年)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연 100명
	연 100명 X 2개 학년 = 연간 총 200명
항공정비사과정(헬리콥터과정)	연 24명
	연 24명 X 1개 학년 = 연간 총 24명

제17조 (교육기간 및 편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12의 9에의거, 항공정비사 양성기간은 2,4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교육진행

- 1) 학과교육은 1,310시간을 진행하고, 교실당 학과교육 동시 최대인원을 법 규정에 따라 30명으로 한다.
- 2) 실기교육은 1,100시간을 진행하고, 교관 한 명당 12명 이내로 운영한다. 단 일부 교육 시간은 방학(하계, 동계)중에 항공운송사업자(AOC) 또는 항공기 정비조직인증기관(AMO) 등의 업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3) 한서대학교 전문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서를 토대로 전체 2년 과정동안 학과교육 1,305시간, 실기교육 1,105시간으로 하여, 항공정비사(비행기 과정) 자격증명 과정 및 항공정비사(헬리콥터 과정) 자격증명 과정 교육이행 총시간은 각각 2,410시간 이상을 진행토록 한다.

단, 항공정비사 과정의 비행기 과정과 헬리콥터 과정의 공통 교과목은 상호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 4) 시험 시간은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에 의거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의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은 한서대학교 교육기관에서 편성토록 한다.
- 2) 교육기관은 편성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실기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3) 방학을 이용하여 교과 및 실기수업을 편성할 수 있으나, 주5일, 일당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편성한다.

제18조 (입과)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별표 12의 9에 의거한 교육과정의 입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입과시기

- 1) 입과는 한서대학교 학사운영에 맞춰 학기초에 실시한다.

나. 교육과정 입과조건

1)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 가) 한서대학교의 교양과목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 교육규정에 명시한 항공학부 또는 항공융합학부에서 개설한 학과과목 이수 가능한 자

단, 항공학부의 항공정비학과는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기술교육원에 입과할 수 있다.

- 나) 입과 대상자는 입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지정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한다.

- 다) 위탁교육 과정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료 시까지 모든 교과목 이수가 가능한 자

2) 항공정비사과정(헬리콥터과정)

- 가)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을 이수한 자

- 나) 위탁교육 과정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료 시까지 모든 교과목 이수가 가능한 자

다. 입과 보고

- 1) 본 교육기관에 입과 한 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을 교육과정별로 입과 후 10일 이내에

항공안전법 제48조 제9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제19조 (선발)

가. 본 교육기관에 입과 하고자 하는 자는 입과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교육원 소정의 입과원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 3) 토익 성적표
- 4)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이수증(헬리콥터과정 입과하는 자에 한함)

나. 입과 심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서류심사
- 2) 학과 성적 및 토익성적
- 3) 면접

다. 합격자 선발은 입과 전 전체 학년의 성적 및 토익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라. 면접은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0조 (학점인정)

1. 본 교육원 입과 이전 항공학부 또는 항공융합학부에서 필수 학과목 및 실기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 그 학점 및 실기 시간을 인정한다.
2. 제22조에 의거 일정기간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휴학 전 이수한 학과목의 학점과 실기 시간을 인정한다.
3. 기술교육원 입과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한서대학교의 특별학점으로 연간 3학점의 전공과목 학점(2년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편입) 제1조 교육목표 및 목적에 의거 편입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제22조 (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이수 중 질병, 사고 등에 의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2. 군입대로 인하여 연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자
3.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유급)

본 과정 수료일까지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각 교과목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 이내

의 과목별 유급으로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불합격 과목에 합격한 경우,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24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해당 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 개시 후 7일 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제25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7일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한서대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리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수업일수의 15% 초과로 결석 처리된 자
5. 장기간 무단결석한 자
6. 학과교육은 1회의 재수강, 실기교육은 2회의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자

제26조 (결석자 처리 기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4의 2에 의거 최대 결석허용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5% 미만이어야 하며, 결석학생에 대하여는 결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가. 보충수업대상자 : 총 과목별 교육시간의 결석이 15% 미만인 자

나. 보충수업시기 : 학기 단위

다. 수업 및 관리교관 : 담당교과 교관

라. 수업방법 : 담당교과 교관 감독하에 자율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Report 또는 실습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7조 (교과편성)

가. 훈련운영기준 B001. 전문교육과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항공정비사 비행기과정 및 헬리콥터과정의 교육과목별 교육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교육 실시는 입과차수별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운영하여야 한다.

○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항공법규	국제항공법 (ICAO와IATA에관한내용포함)	45	-	-항공법규* -항공법* -국제항공법* -국내항공법*	-	45	
	국내항공법 (사고조사및항공보안포함)						
	항공정비관리 (정비관련규정,도서,정비조직, 정비프로그램,정비방식및양식 기록에관한내용포함)	45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정비매뉴얼* -항공기정비학개론*	-	45	
	중간고사 (2회 이상)	5	-	중간고사 (2회 이상)		5	
	과목 소계 (기준 95)	95	-	과목 소계 (95)		95	
정비일반	수학·물리	30	-	-공업수학(I or II)* -응용공업수학* -선형대수학* -항공기초수학* -공학기초수학* -기본공학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I* -미적분학* -미적분학(I or II)* -항공물리학*	-	30	-
	항공역학	45	-	-항공역학* -공기역학* -비행역학*	-	45	-
	항공기 도면	20	25	-항공정비일반* -항공정비일반 I* -항공정비* -항공정비II*	항공정비기초실습 I	45	60
	항공기 재료, 공정,하드웨어	20	25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20	10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10	20				
	유체 라인 및 피팅	10	35	-항공정비일반 II*	항공정비기초실습 II	60	60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10	20				
	항공기 세척 및 부식방지	15	15				
	검사원리 및 기법	30	15				
	인적수행능력 (위기및오류관리포함)	45	-	-항공인적요인*	-	45	-
				-항공기술영어I		60	
				-항공기술영어II		60	
	중간고사 (2회 이상)	10	-	중간고사 (2회 이상)		10	-
	과목 소계 (기준 430)	265	165	과목 소계 (475)		355	120
항공기체	항공기 구조	50	55	-기체구조* -항공기체I*	항공기체구조 실습	60	60
	항공기 천, 외피, 목재와 구조물수리	20	10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25	50	-항공기체수리 I*	항공기체수리실습 I	60	60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20	40				
	첨단 복합 소재	10	20	-항공기체수리 II*	항공기체수리실습 II	60	60
	항공기 용접	30	60		항공기체수리실습 III		60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20	25	-항공기계통공학* -항공기체II* -항공기체계통*	항공기체계통실습 I	60	60
	화재방지, 제·방빙 및 제우계통	15	15		항공기체계통실습 II		60
	항공기 연료계통	30	30				
	항공기 유압계통	30	30	-항공기계통특론*	항공기체계통실습 III	45	60
	항공기 착륙장치계통	30	30				
	중간고사 (2회 이상)	15	-	중간고사 (2회 이상)		15	
	과목 소계 (기준 660)	295	365	과목 소계 (720)		300	420
항공기 발기	프로펠러	20	25	-항공기왕복엔진* -항공발동기I* -항공기동력장치* -추진기관*	왕복엔진실습 I	60	60
	경량공기 엔진	10	5				
	왕복엔진 일반 및 흡·배기계통	40	50		왕복엔진실습 II	60	60
	왕복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왕복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왕복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왕복엔진 정비 및 작동	20	25				
	왕복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가스터빈엔진 일반 및 구조	20	25	-항공기가스터빈엔진* -항공기가스터빈엔진 I* -항공발동기II* -항공기관*	가스터빈엔진실습 I	45	60
	가스터빈엔진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가스터빈엔진실습 II		60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가스터빈엔진실습 III		60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가스터빈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가스터빈엔진특론*	가스터빈엔진실습 IV	60	60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	10	20	-엔진융복합이론 -항공기엔진운영*		60	
	중간고사 (2회 이상)	5	5	중간고사 (2회 이상)		5	5
	과목 소계 (기준 640)	285	355	과목 소계 (595)		230	365
전기 전자 계기	기초전기·전자	120	75	-기초전기전자공학* -전기공학개론*	전기전자 기초실습	45	60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전기전자공학* -항공전기전자기초* -전자기학(I or II)* -회로이론(I or II)* -전자회로(I or II)* -전기전자공학개론*			
			-항공전자전기계기* -항공전기전자계기II*	4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항공기 전기계통	항공기 전기 · 계기실습	60	6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항공기 계기계통 -항공전기전자계기계통*		60	
	항공기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120	60	-통신이론(I or II)* -무선통신공학* -항공전자통신* -항공전자통신(I or II)* -항공무선통신* -항공통신이론및실험* -항공디지털통신및실험* -항공통신.항법 II*	항공통신 · 항법실습	45	60
				-자동항행시스템*		60	
	중간고사 (2회 이상)	5	10	중간고사 (2회 이상)		5	10
	과목 소계 (기준 570)	365	205	과목 소계 (510)		320	190
최종	종합평가시험 (기준 15)	5	10	종합평가시험 (한서대 15)		5	10
소계		1,310	1,100	소계		1,305	1,105
총 계		2,410		총 계		2,410	

주) 학부 개설과목(*)은 한서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수하며, 관련 과목이 복수인 경우 최소 한 개 과목 이상 이수한다.

○ 항공정비사과정(헬리콥터과정)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항공정비사 과정	국제항공법 (ICAO와IATA에관한내용포함)	45	-	-항공법규* -항공법*	-	45	
	국내항공법 (사고조사및항공보안포함)			-국제항공법* -국내항공법*			
	항공정비관리 (정비관련규정,도서,정비조직, 정비프로그램,정비방식및양식 기록에관한내용포함)	45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정비매뉴얼* -항공기정비학개론*	-	45	
	중간고사 (2회 이상)	5	-	중간고사 (2회 이상)		5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과목 소계 (기준 95)	95	-	과목 소계 (95)		95		
정비 일반	수학·물리	30	-	-공업수학(I or II)* -응용공업수학* -선형대수학* -항공기초수학* -공학기초수학* -기본공학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I* -미적분학* -미적분학(I or II)* -항공물리학*	-	30	-	
	항공역학	45	-	-항공역학* -공기역학* -비행역학*	-	45	-	
	항공기 도면	20	25	-항공정비일반* -항공정비일반 I* -항공정비*	항공정비기초실습 I	45	60	
	항공기 재료, 공정,하드웨어	20	25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20	10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10	20					
	유체 라인 및 피팅	10	35	-항공정비일반 II*	항공정비기초실습 II	60	60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10	20					
	항공기 세척 및 부식방지	15	15					
	검사원리 및 기법	30	15					
	인적수행능력 (위기및오류관리포함)	45	-	-항공인적요인*	-	45	-	
				-항공기술영어I		60		
				-항공기술영어II		60		
	중간고사 (2회 이상)	10	-	중간고사 (2회 이상)		10	-	
	과목 소계 (기준 430)	265	165	과목 소계 (475)		355	120	
항공 기계	항공기 구조	10	5	-기체구조* -항공기체I*	항공기체수리실습 I	60	60	
	항공기 천, 외피, 목재와 구조물수리	20	10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25	50	-항공기체수리 I*		60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20	40					
	첨단 복합 소재	10	20	-항공기체수리 II*	항공기체수리실습 II	60	60	
	항공기 용접	30	60		항공기체수리실습 III		60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20	25	-항공기계통공학* -항공기체II* -항공기체 계통*	항공기체계통실습 I	60	60	
	화재방지, 제·방빙 및 제우계통	15	15		항공기체계통실습 II			
	항공기 연료계통	30	30		60			
	항공기 유압계통	30	30	-항공기계통특론*	항공기체계통실습 III	45	60	
	항공기 착륙장치계통	30	30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20	25	-헬리콥터 구조*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실습	45	60
	헬리콥터 조종 계통	20	25				
	중간고사 (2회 이상)	15	-	중간고사 (2회 이상)		15	
	과목 소계 (기준 660)	295	365	과목 소계 (765)		345	420
항공발기	프로펠러	20	25	-헬리콥터 동력전달장치	헬리콥터 엔진실습	45	60
	경량공기 엔진	10	5				
	헬리콥터 엔진	20	25				
	헬리콥터 동력전달장치	20	25				
	왕복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항공기왕복엔진* -항공발동기I* -항공기동력장치* -추진기관*	왕복엔진실습	60	60
	왕복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왕복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왕복엔진 정비 및 작동	20	25				
	왕복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가스터빈엔진 일반 및 구조	20	25	-항공기가스터빈엔진* -항공기가스터빈엔진 I* -항공발동기II* -항공기관* -가스터빈엔진특론*	가스터빈엔진실습 I	60	60
	가스터빈엔진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가스터빈엔진실습 II		60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엔진융복합이론 -항공기엔진운영*	가스터빈엔진실습 III	60	60
	가스터빈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가스터빈엔진실습 IV		60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	10	20				
중간고사 (2회 이상)	5	5	중간고사 (2회 이상)		5	5	
과목 소계 (기준 640)	285	355	과목 소계 (595)		230	365	
전기전자계기	기초전기·전자	120	75	-기초전기전자공학* -전기공학개론*	전기전자 기초실습	45	60

과목	국토부 세부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 시간		한서대학교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이론	실기
				-전기전자공학* -항공전기전자기초* -전자기학(I or II)* -회로이론(I or II)* -전자회로(I or II)* -전기전자공학개론*			
			-항공전자전기계기* -항공전기전자계기II*	4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항공기 전기계통	항공기 전기·계기실습	60	6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항공기 계기계통 -항공전기전자계기계통*		60	
	항공기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120	60	-통신이론(I or II)* -무선통신공학* -항공전자통신* -항공전자통신(I or II)* -항공무선통신* -항공통신이론및실험* -항공디지털통신및실험* -항공통신.항법 II*	항공통신·항법실습	45	60
				-자동항행시스템*		60	
	중간고사 (2회 이상)	5	10	중간고사 (2회 이상)		5	10
	과목 소계 (기준 570)	365	205	과목 소계 (510)		320	190
최종	종합평가시험 (기준 15)	5	10	종합평가시험 (한서대 15)		5	10
소계		1,310	1,100	소계		1,350	1,105
총 계		2,410		총 계		2,455	

주) 학부 개설과목(*)은 한서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수하며, 관련 과목이 복수인 경우 최소 한 개 과목 이상 이수한다.

다. 아래의 경우 교육시간 범위 내에서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외부 전문가에 의한 초청 강의(산업체, 공공기관 등)
- 2) 항공관련 행사 및 산업체 현장실습·견학
- 3)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라. 다른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동일한 교육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학생의무)

교육원 입과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본 교육원의 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 본 교육원의 재정은 한서대학교 재정에 따른다.

제30조 (회계) 본 교육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관리는 대학본부에서 한다.

제 5 장 시설 장비 및 비품, 교재

제31조 (시설장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 및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2에 의한, 시설·장비 이상을 갖춘다.

제32조 (교육교재)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범위와 수준 이상이 포함된, FAA AMT 표준교재, 국토교통부 표준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교재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제33조 (교육비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12 및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비품 및 교육보조 자료를 갖춘다.

제34조 (안전보호장구)

교육생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순찰 및 안전보고제도 등을 운영하며,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호장구(안전모, 보안경) 등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평 가

제35조 (평가방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 기준을 따르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가. 학과 평가

- 1) 시험요건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료하여야 한다.
- 2) 성적판정 : 100점 만점의 경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한다.
- 3) 추가교육 : 피교육생의 성적이 합격점 미만인 경우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훈련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4) 재시험 : 학과 및 실기시험의 불합격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재시험을 2회까지 실시해야 한다.
- 5) 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교육 수료전에 시행하며, 교육 이수생의 종합적인 교육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과 및 실기 평가 등급

등 급	A+	A	B+	B	C+	C	D
점 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 6) 문제검토 : 학과 주임교관과 학과교관은 제출된 시험문제 및 정답 안을 검토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험문제를 인쇄하여 시험 전까지 학과주임교관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나. 실기 평가 시험방법 및 실시요령

- 1) 실기평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14조에서 의해서, 항공기체, 기관, 전기전자 실습실 등에서 실시하며,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현장실습 장소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 2) 실기평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20조에서 22조에 의해서 실기시험표준서의 내용의 실기 및 구술로 평가한다.
단, 시험의 요건, 판정, 재시험 및 평가비율, 출제 범위 등은 학과평가와 같다.
- 3) 현장실습이 시행될 경우, 교관은 1년에 2회 이상 피교육생이 복무 또는 근무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실습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다. 시험결과 관리

- 1) 시험결과를 채점 후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점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2) 불합격자에게 추가 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라. 시험결과 보관

- 1) 답안지는 담당 교관과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무실에 보관한다.
- 2) 실기시험 결과물은 담당 교관과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1년간 보관한다.

마. 시험 감독

학과 교관 및 실기 교관이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조교 또는 보조교관을 활용할 수 있다.

바. 채점

교육평가 제4장 평가방법의 제11조(성적의 판정)에 준하여 채점한다.

제 7 장 학사관리

제36조 (학사보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1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 (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가. 입과 보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입과보고서를 입과 후 10일 이내에 보고

- 1) 입과자 명단
- 2) 교육기간
- 3) 교육계획보고서(과목, 시간, 교관, 장소 포함)

나. 결과 보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 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

- 1) 교육이수자의 명단
- 2) 교육기간
- 3)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수험자의 명단
- 4) 교육완료보고서(계획보고서내용, 출석종합,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정평가, 교관평가)

제37조 (증명서 발급)

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 및 4 에 따라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정 이수증명서(별지 1)를 발급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나. 이수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다.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주소

라. 이수한 교육과정 명(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이수를 명기할 것)

마. 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수료했다는 내용의 진술

바. 이수증명서 발급의 연월일

사. 이수증명서 발급자의 직책, 성명 및 직인

아. 이수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허위발급 방지를 위하여 이수증 발급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과 함께 간인하여 발급한다.

제38조 (기록 및 보관)

본 교육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이 학사와 관련된 학생의 출석 등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문서를 작성하여 졸업 후 10년간 기록보관 유지하고,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가. 교육과정 명

나. 피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주소

다.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라. 교육훈련 이수과목 및 내용

마. 교육훈련 평가결과

바. 이수일자 등

제 8 장 교육 품질관리 보증 방안

제39조 (교육훈련 품질보증)

교육훈련 품질보증은 교관 및 훈련운영 전반에 대하여 훈련의 계획, 실시, 분석에 있어 통일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40조 (과정평가 설문)

- 가. 교육원장은 항공정비사과정의 표준화와 개선을 위하여 [별지 2]의 양식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문 항목을 작성하고 차수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종료 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나. 모든 설문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 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교육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41조 (교관평가)

- 가. 교육지원부에서는 교관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공하고, 해당 교관에게 Feedback이 가능하도록 교관평가 설문지를 작성한다.
- 나. 교육지원부는 각 차수별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생에게 교관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교관 및 평가관의 평가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 다. 교관 Feedback을 위해 교관평가 내용 중 교관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보하여 개선토록 한다.
- 라. 교관은 Feedback된 자료를 통하여 진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제42조 (시험문제의 품질관리)

교육원장은 평가기준(규정/절차)의 적합성과 유효성 및 이행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취 개선함으로써 교육평가의 품질을 유지한다.

제 9 장 보증보험가입 및 교육비 반환

제43조 (보증보험가입)

한서대학교의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기술교육원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므로 고등교육법에 저촉되어 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제44조 (교육비 반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교육생의 자발적 의사로 퇴교할 경우 교육비 환부에 관련된 일체는 내부결재를 통하여 본교 재무과와 협의 후 처리한다.

제 10 장 상벌

제45조 (포상)

교육원장은 정규교육과정 입과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대내외적으로 본 교육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내부회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 (징계)

교육원장은 정규교육과정 입과생 중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47조 (준용)

- 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항공안전법 제48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해 제정된 한서대학교 학칙을 준용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정한다.
-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항공안전법 제48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한서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본 규정은 2020년 8월 25일 제정한다.

본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5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이수증명서

번호(No.) :

이 수 증 명 서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주 소(Address) :

위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지정서 번호 :)의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을 다음과 같이 정상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Aircraft Maintenance training course(Aircraft)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ATO No :)

○ 교육기간(Training Period)

- 학과교육(Theoretical Training) : ~
- 실기교육(Practical Training) : ~

년 월 일
(Date Of issue)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

직인

번호(No.) :

이 수 증 명 서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주 소(Address) :

위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지정서 번호 :)의 항공정비사과정(헬리콥터)을 다음과 같이 정상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Aircraft Maintenance training course(Hellicopter)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ATO No :)

○ 교육기간(Training Period)

- 학과교육(Theoretical Training) : ~
- 실기교육(Practical Training) : ~

년 월 일
(Date Of issue)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

직인

[별지 2] 교육품질을 위한 설문지

〈교육과정 설문조사〉

■ 다음 질문에 √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	문항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육 과정	1. 교육과정이 항공정비사 자격취득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가?					
	2. 과정운영이 교수계획에 따라 운영되는가?					
	3. 교육과정의 이론시간 배분은 적당한가?					
	4. 교육과정의 실기시간 배분은 적당한가?					
	5. 교육과정이 항공정비 현장직무에 도움되게 편성되었는가?					
수업	6. 실습을 위한 사전 지식 및 장비나 공구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가?					
	7. 실습당 학생수(그룹)는 적당한가?					
	8. 학생이 직접 기술이나 정보탐색 등을 할 수 있고 교수와 상의할 수 있는가?					
	9. 실습과 평가에 대해 자료제공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가?					
	10.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시설 장비	11. 교육용 장비나 공구는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12. 시설 및 기자재는 분류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는가?					
	13. 장비 및 공구사용시 개인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14. 장비나 공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는가?					
	15. 개인보호 장비들은 충분히 제공되는가?					
기타	교육과정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별지 3] 현장실습 일지

현장실습 일지	
학 교	한서대학교
소 속	항공기술교육원
성 명	
학 과	
학 번	



1991

한서대학교

년 월 일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356-953 충남 태안군 남면 금섬로 236-49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전화(041)671-6268

[illegible]